

이 의 신 청 심 사 결 정 서
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이의신청<br>어업경영체 | 성 명<br>(법인명)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생년월일<br>(법인등록번호) |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주 소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전화번호<br>(휴대 폰번호) |           |
| 이의신청<br>내용    | 처분내용         | 통지서<br>(공고문) 번호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통지(공고) 일자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처분결과<br>및 사유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이의신청 의견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 심사결정          | 결 정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(수용, 기각)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사 유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
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6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- ※ 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- 1.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은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원처분(原處分: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말합니다)을 대상으로 하고, 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.
  - 2.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은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(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)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.
  - 3.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는 경우 ○○지방해양수산청장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(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).
  - 4.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른 행정법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(「행정소송법」 제9조).

년 월 일

○○지방해양수산청장

직인